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2 회

제 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6,513,384	18, 195, 402
일반회계		568,716,806	17,061,504
특별회계		37,796,578	1,133,897
	공기업특별회계	12,920,175	387,605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2,920,175	387,605
	기타특별회계	24,876,403	746,292
	의료보호특별회계	2,505,204	75,156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57,298	7,719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842,157	25,26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5,390,577	461,717
	주택 사업 특별 회계	864,349	25,93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32,618	60,979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2,984,200	89,526

- 제 2 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 "과 같다.
-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412,265천원으로 한다.
-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